

충청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이용조례안

검 토 보 고

1997. 9. 26

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

검 토 보 고

1997. 9. 25
교육사회위원회

1. 제 안 자 : 충청북도지사 제출

2. 제안및회부일자

- 제 안 : 1997년 9월 12일 제출
- 회 부 : 1997년 9월 12일

3. 제안이유

- 장애인복지법 제5조에 의한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을 위한 기금의 조성과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
4. 주요골자

- 기금은 충청북도의 출연금,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,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함 (안 4조)
- 기금운용은 당해연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으로 운용하되 다음 목적에 사용함 (안 10, 11조)
 - 등록된 장애인의 보호·육성
 -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장애인단체의 지원 등

- 기금의 운영관리를 위한 기금관리위원회 구성 (안 5조)
 - 위원장 포함 12인 이내 (위원장 : 행정부지사)
- 기금관리를 위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지정 운영 (안 11조)
-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에 제출 (안 12조)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기금 설치및운용조례안을 검토한 바,
- 장애인복지법 제5조에 의한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단체의 보호·육성을 위한 기금의 조성과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